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건축 30420 -	(전화: 450 - 1390)	시행령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 (3) 1.	구	청
수신처 보존기간			장
시행일자	'90. 7.		
보조 기관	부구청장 국장 과장	협조 기관	공보실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기안책임자	건축 2계장		무시통계
경유 수신 참조	과안참조	발신 명칭	구청청장
제목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건축 가능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제 1 안)	<div style="text-align: right;">  </div>		
수신	: 내부결재		
제목	: 같은건		
<p>1. 건축업 시행령 (별표 1)상에 전용주거지역내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건축 가능구역을 도시계획상 지정이 없을 경우 허용구역을 지정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90. 1. 18. 제정) 허용구역 지정 권한은 구청장에게 내부위임(90. 5. 28)됨에 따라,</p> <p>2. 정부의 주택건설 촉진정책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도 관내 전용주거 지역 중 도시계획상 지정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구역에 대하여 별안과 같이 건축가능</p>			

구역 지정(안)을 업언하여 14일간 일간신문에 (서울특별시청 명역) 공고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코져 합니다.

○ 건축 가능구역 지정(안)

- 능동, 송정동, 근자동, 구의동내 전용주거지역중 일부 (별첨도면 참조)

가) 공고방법 : 일간지 2개소 (조선간, 본력공고)

나) 지출과목 : 건설사업비, 주택사업, 건축지도, 수용비 및 수수료

다) 지출방법 : 공고후 청구에 의한 지출

라) 공고내용 : 별첨 공고안과 같음

(제 2 안)

수 신 : 서울특별시청

참 조 : 공보관

제 목 : 신문공고 의뢰

1. 우리구 관내 전용주거지역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건축가능구역을 지정코져 마로붙임의 공고안과 같이 공고 주민의견을 청취코져 아래와 같이 신문공고 게재를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전용주거지역내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건축가능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나) 공고방법 : 일간지 2개소 (조선간 본력공고)

다) 공고요구일 : 90. 7.

따로붙임 : 공고안 3부. 끝.

(제 3 안)

수 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전용주거지역내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건축가능구역, 지정안공람공고통보

1. 우례구 관내 전용주거지역중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부지역(별첨)을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건축가능구역으로 지정코자 따로붙임과 같이 공람공고 하였기 통보여오니(하니) 관련업무에 참고 하시기(하기) 바라며,

2. 아울러 관계규정상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을시는 공람기관내 건축과장 참조 통보하여 주시고,

3. 관할 동장은 공고문을 동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들에게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을시 공람기관대표와 동시 보고 할 것.

따로붙임 : 공고문 사본 1부. 및 관계도면 1부. 끝.

수신처 : 지적과, 도시정비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능동, 송정동, 군자동,

구역동 (장), *정읍새마을회, 정읍시농협, 정읍시농협, 관내신협.*

제 4 안

수 신: *서울특별시*

참 조: *건축지도아장*

31

제 목: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가정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1 건지 30420-72 (90. 5. 28) 호의 관련입니다.

2 세 대의 관련하여 여러 세권이 다양한 주변에
일부 전용주거지역을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건축가능지역을
조정하여 별첨과 같이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합니다.

첨부: 공간생활 일부 등

공 고 (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 413 호

1. 건축법 시행령 제 66조 제 1항 제 1호에 의한 별표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건축 가능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코자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본 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 기일내에 의견서를 첨부 공람 장소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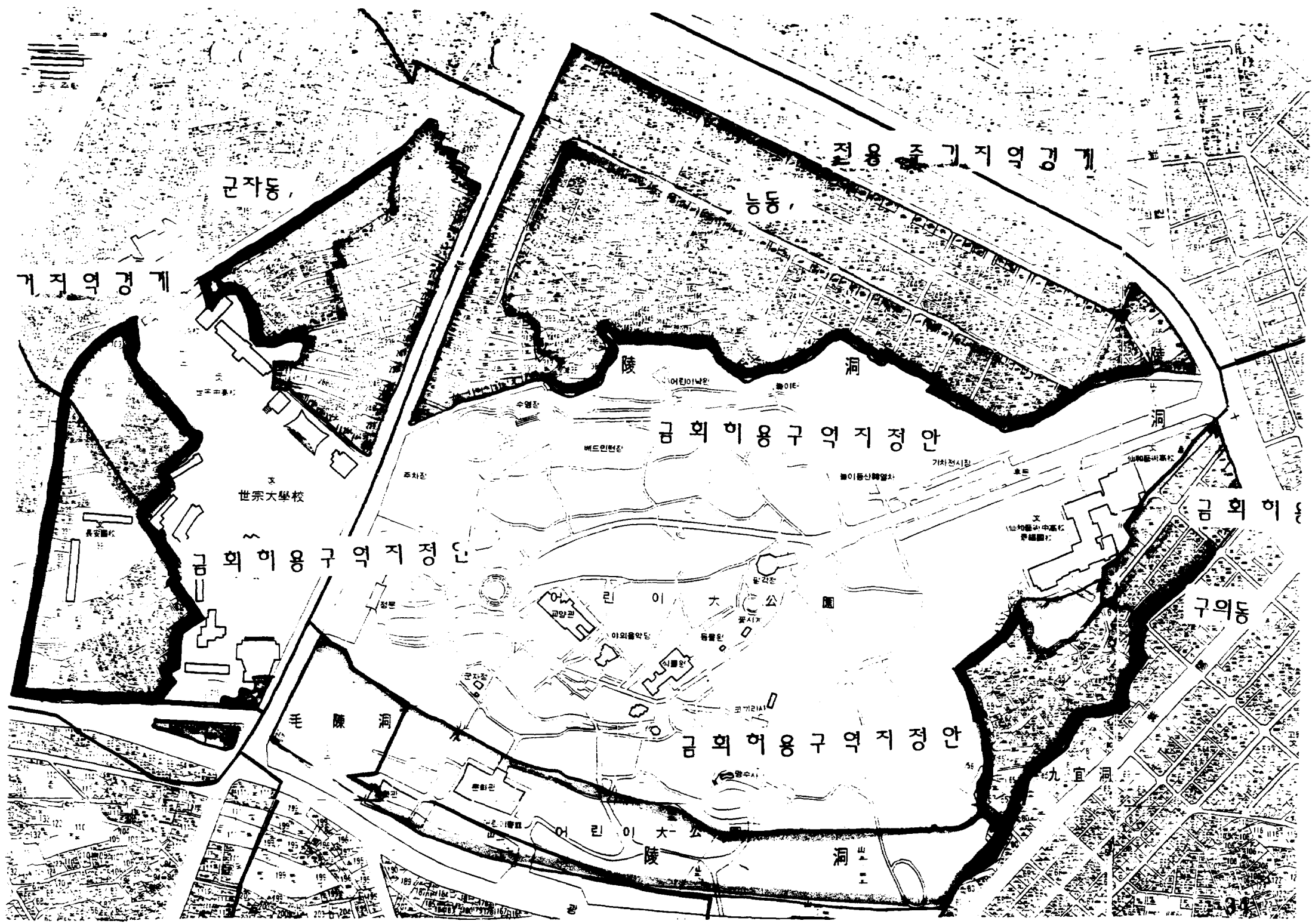
가) 공 람 기 간 : 90. 7. . - 90. 7. . (14일간)

나) 공 람 장 소 : 성동구청 건축과 (450 - 1390 - 2)

다) 지정구역범위 : 성동구 능동, 송정동, 근작동, 구역동의
전용주거지역중 일부 (도면 생략) : 1380 팔저 3^호 4^호

1990. ' 7.

서 울 특 별 시 장



거적의경계

근자동

전용종기적의경계

이동

김희이용구역지정안

김희이용구역지정안

세종대학교

김희이용

구의동

김희이용구역지정안

천연호

어린이대공원

어린이대공원

구의동